##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4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권칠승·황명선·박홍근

서영교・정준호・임호선

송옥주 • 한민수 • 윤종군

문금주 · 김태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 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시행 중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 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 한 행위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아
	<u>니하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u>
	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
	<u>다.</u>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u>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계엄 시행 중 누구든지 국
	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
	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제14조(벌칙) ①・② (생 략)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 &lt;신 설&gt;</u>	③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

- ③ <u>제1항</u>에 규정된 죄의 미수 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병과(倂科)할 수 있다.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 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 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 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u>④</u> 제1항 및 제3항-----
- <u>⑤</u> 제1항 및 제3항-----